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47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4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이 도시철도공채 중 미상환 채권에 대해 시효만료 전 상환공고 및 상환안내를 강화하되 기존 소멸시효를 유지하고 적정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제1항 중 “3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환급채권의”를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로 “우편 등을 통하여”를 “우편 등으로”로 “절차에 대하여”를 “절차를”로 하며, 아울러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공채상환의 공고는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함(안 제4조의2제1항)
- 나.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되,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제한함(안 제4조의2제2항)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3분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교통위원회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 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 공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도시철도공채----- -----.</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 도공채의 연도별 발행 한도액 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 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서울특 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 시철도공채"라 한다)----- -----.</p>	<p>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개정 안과 같음)</p>
<p><신 설></p>	<p>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 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 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 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 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시장은 다음 해에 소멸시효 가 도래하는 미환급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을 통하여 그 환급 방법 및 절 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 다.</p>	<p>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 내) ① ----- --- 20일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개정안과 같음) <p>② ----- 상환일 이전 미상환 채권의 ----- 우편 등으로 ----- 절 차를 -----. 이 경 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 내는 1회로 한한다.</p>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공채(이하“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도시철도공채”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철도공채”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u>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도시철도공채</u>----- ----- --.</p>
<p>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u>도시철도공채</u>의 연도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u>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u>-----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u>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u>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②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u></p>